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8)

한편 원치 않는 언론 분쟁 사태를 신속하고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언론 측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자율적인 방법과 타율적인 방법이 있다.9) 자율적인 방법은 다시 사전 예방과 사후 처리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 침해에 관한 가장 확실한 사전 예방 방법은 기자의 자기 검열이다.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탁월한 직업의식과 책임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자의 자기 검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회사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서 언론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직무 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하다.

사전 예방을 이와 같이 언론종사자의 자기 검열 및 자체교육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언론기관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그릇된 보도를 바로 잡고 예측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체 통제 장치를 운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주요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맨(자체평가인) 제도가 그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 의사,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에 의한 기사 사전 열람제와 전문기자제 같은 제도를 두어 오보와 허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사후 구제의 방법으로는 언론사 자체의 자율적 피해 구제 기구를 통한 것과 신문 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에 의한 사후구제 등이 있으나 후자 둘은 엄밀한 의미의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가장 간편하고도 효율적으로 언론에 의한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 종사자의 자기 검열, 옴부즈맨 장치, 기사 사전 열람 장치와 같은 자율 통제 장치를 통하여 언론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 어려운 지방지와 지역방송의 경우 이미 국가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중재위원회와 같은 장치를 나름대로 반영교사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한다. 즉 본의 아니게 있을 수 있는 실책에 대하여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거기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자료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체 교정과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한다.

V. 맺음말

언론 중재 제도의 기능관은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언론중재 제도가 처음 생길 당시에는 5공 정권의 언론기본법 치하에서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출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적어도 언론 측을 위해서는 언론이 진실을 추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는 사회적 사명을 다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게 발생하는 대국민 언론 분쟁이 법원의 소송까지 가는 것을 차단해주는 「언론보호」장치로까지 인식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에서 필자는 「언론보호자」로서의 언론중재관도 다시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것은 언론중재 제도가 언론으로부터 본의 아닌 피해를 당한 시민이 일반 시민으로서 사실상 이용하기에 어려운 법정 투쟁을 거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편안하게 피

8) 차재영, 상계논문, p. 6

9) 이병섭, “언론보도의 면책 요건과 한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주제논문집, 2002. 5.

10. p.5.

해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해 주는 「시민보호자」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어쨌든 「언론통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언론 중재 제도의 존재 이유의 무게 중심을 「언론보호」쪽에 둔다는 것과 「시민보호」쪽에 둔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거나 상호 배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차피 「중재」란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조정자의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그 입장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다만 「언론」에 비하여 「시민」 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금까지 취약했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뿐이다.

언론 중재 제도는 가망피해자인 시민측과 언론기관 측 양 당사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똑같이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고 실제로 이는 가망피해자인 시민 측을 위해서나 언론기관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언론 중재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언론 측에서도 이 제도를 단지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도 막게 해주는 -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역풍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 소극적 방어 장치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시민 측으로부터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체 교정과 자기 향상에 이르게 하는 자극원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한다.

그런가 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측으로서도 중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시민의 인격권 보호」라고 구호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날 시민 의식은 급격히 바뀌고 있고 다매체 다채널로 일궈어지는 급격한 정보 혁명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과잉에 따라 언론 보도에 의한 사회적·개인적 권익 침해의 빈도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존 기능에 덧붙여 시민을 위한 교육 계몽의 기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한다.